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국장
람	

제1203호 2016. 9. 5(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12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12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2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13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1-6호선)사업 실시계획 고시 ----- 4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157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162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시설:도로) 결정 입안(안)
열람·공고 ----- 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174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176호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 22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6 - 12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8.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가. 허가 번호 : 제2016 - 08호
나. 허가연월일 : 2016. 08. 26.
2. 점용·사용의 목적 : 건축허가 신축으로 인한 오배수 방류
3. 점용·사용의 장소 : 인천 서구 대곡동 727-36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가. 방류량 : 3m³
나. 기 간 : 2016. 09. 01. ~ 2018. 12. 31. (2년 4개월)
5.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주소
가. 성 명 : 이**
나. 주 소 : 인천 서구 완정로 **번길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 - 12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9.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경명대로 457 외 2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9. 2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6-09-02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249-51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457 (경서동)	2009-07-10	계양산과 천마산사이 징행이교개를 통과하는 도로구간의 징행이교개의 한자표기법인 <경명>명칭에서 부여	
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81-53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11번길 14 (경서동)	2013-07-30	보석로 시작지점부터 약 1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시곗로43번길 18 (경서동)	인천광역시 서구 시곗로43번길 20 (경서동)	2009-09-22	시곗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39-2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67번길 8 (경서동)	2012-03-30	청라한울로의 시작점에서 6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24-1	인천광역시 서구 가경주로 14 (가정동)	2009-09-22	가정동의 옛 이름인 "가경주"에서 차명	
6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1-96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120번길 13-31 (원창동)	2009-09-22	북항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1-91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140 (원창동)	2009-09-22	인천의 대표적 항구인 북항을 지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1-57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120번길 13-46 (원창동)	2009-09-22	북항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1-70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120번길 13-28 (원창동)	2009-09-22	북항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1-65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120번길 13-32 (원창동)	2009-09-22	북항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1-62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120번길 13-42 (원창동)	2009-09-22	북항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1-73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120번길 13-18 (원창동)	2009-09-22	북항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6-6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89번길 23 (원창동)	2009-09-22	원창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6-57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89번길 21 (원창동)	2009-09-22	원창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434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934번길 41-20 (가좌동)	2009-07-10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433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934번길 41-21 (가좌동)	2009-07-10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432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934번길 41-22 (가좌동)	2009-07-10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437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934번길 41-23 (가좌동)	2009-07-10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436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934번길 41-24 (가좌동)	2009-07-10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430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934번길 41-25 (가좌동)	2009-07-10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1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429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934번길 41-26 (가좌동)	2009-07-10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2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84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934번길 41-27 (가좌동)	2009-07-10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3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41-4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701번길 1 (가좌동)	2009-07-10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0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4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0	인천광역시 서구 가천로117번길 25 (마전동, 아르떼빌)	2008-12-31	가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5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0	인천광역시 서구 가천로103번길 7 (마전동)	2008-12-31	가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6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796-17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197번길 8 (원당동)	2008-12-31	고산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7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37-3	인천광역시 서구 도담로 15 (오류동, (주)준산업)	2012-10-25	도담로에서 어달번째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13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1-6호선)사업 실시계획 고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인천고시 제1999-80호(1999.06.23)]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공고[인천서구공고 제2016-904호(2016.07.01)]된 인천 서구 왕길동 680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소1-6호선), 사업명: 검단2지구 소1-6호선 도로개설 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57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6. 9.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8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소1-6호선) 사업
 - 【명칭】 검단2지구 소1-6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도시계획시설(도로:소1-6호선) L=109m, B=10.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6.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생략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157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동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이 적합하다고 판단되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6. 8.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공고기간 : 2016. 9. 5. ~ 2016. 9. 20.(15일간)

□ 공고내용

1. 행정처분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등록번호	60어9546 외 19대 (“붙임” 참조)		
	차명			
3. 운행정지사유	소유자의 요청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할관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명	교통민원과
	주소	인천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 032-560-4877, FAX 032-560-2794)		

※ 유의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등록된 자동차, 즉 무등록 자동차를 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구청 교통민원과 차량관리팀(☎ 032-560-48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불법 운행된 사유	등록일
1	60어9546	300C	개인간의 채무관계	2016.08.30
2	경기46러8601	레조2.0S LPG AT	개인간의 채무관계	2016.08.26
3	07보4802	레조2.0S LPG AT	법인사업체의 도산	2016.08.26
4	98구4446	현대트랙타	법인사업체의 도산	2016.08.26
5	94누3214	리베로슈퍼캡초장축(LIBERO)	법인사업체의 도산	2016.08.26
6	94보4963	포터Ⅱ다용도탑차 (PORTERⅡ)	법인사업체의 도산	2016.08.26
7	61저4142	그랜저(GRANDEUR)	법인사업체의 도산	2016.08.26
8	62저8423	에쿠스	법인사업체의 도산	2016.08.26
9	62저8466	그랜저	법인사업체의 도산	2016.08.26
10	69로7172	카스타	법인사업체의 도산	2016.08.26
11	98누7024	스카니아트랙터	법인사업체의 도산	2016.08.26
12	78더2158	그랜드카니발	법인사업체의 도산	2016.08.26
13	62저8462	SM525V	법인사업체의 도산	2016.08.26
14	39주2836	SM7	개인간의 채무관계	2016.08.26
15	06조3832	체어맨	법인사업체의 도산	2016.08.26
16	22서3990	BMW X5 4.4	법인사업체의 도산	2016.08.26
17	29머9365	BMW 745 i	법인사업체의 도산	2016.08.26
18	58거2212	300C	개인간의 채무관계	2016.08.22
19	57버3105	제네시스(GENESIS)	기타	2016.08.20
20	25도7875	마티즈 0.8S AT	개인간의 채무관계	2016.08.19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162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 입안(안) 열람·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6. 9.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주요 입안내용

가. 시설명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류)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산217-14번지 일원

○ 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류) 신설 (연장:147m, 폭원:6m)

나. 입안사유

○ 협소한 기존 도로를 확장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 사용 중인 도로를 연결하고 낙후된 기반시설의 정비 및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601	6	국지 도로	147	소로2-18	- (당하동 산217-18)	일반 도로	-	-	-

2)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소로3-6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연장(L) : 147m - 폭(B) : 6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소한 기존 도로를 확장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 사용 중인 도로를 연결하고 낙후된 기반시설의 정비 및 지역 주민의 편익을 증진

2.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1)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2)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서구청 도시개발과 (☎ 032-560-4762)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174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정정)합니다.

2016. 9.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공동주택 관리법」 제정·시행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을 개정하고 변경된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정비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의 권익과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관리법」 제·개정에 따른 조례 근거법령 개정(안 제1조)
-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고 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 했던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명’하도록 변경하며 위원의 자격 기준을 정비(안 제3조)
- 위원회의 기능을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정비(안 제4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명확화(안 제7조)
-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9. 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032-560-4736, FAX 032-560-276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52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로,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를 “회의·운영 등에”로 한다.

제2조 중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를 “행정구역에서 「주택법」”으로, “득한”을 “받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선출하며”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제3조제4항 본문 중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주택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된 다음”을 “다음”으로, “심의·의결한다”를 “심의·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회의개최 7일”을 “회의 개최 3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히 조치해야 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개의”를 “회의를 시작”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위원회의 간사 등)”을“(조정위원회의 간사 등)”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위원의 제척)”을“(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를 “조정위원회에서 제척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제8조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를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

제8조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중전의 제3호) 중 “당해 분쟁의 대상”을 “해당 사건의 원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제8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원하는 자는 당해”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관계서류”를 “관계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일”을 “5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수당등)”을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4조 중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을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8조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구성되는 조정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52조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 ----- ----- 회의·운영 등에 ----- ----- -----.</p>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p>	<p>제2조(적용범위) ----- ----- - 행정구역에서 「주택법」----- ----- 받은 ----- -----.</p>
<p>제3조(위원회 구성) ①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3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① ----- ----- ----- ----- -----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p>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법률·세무·회계·건축·토목·설비·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후단 삭제>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조정위원회는 원활한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택법」 제52조제2항제1호 부터 제5의2호까지

2. ~ 6. (생략)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생략)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④ -----
-- 2년으로 한다--,-----

-----.

제4조(기능) -----

- 다음 -----
----- 심
의·조정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2. ~ 6.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
----- 총괄
한다.

② -----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으
로 한다.

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회의 개최 3일 --

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② (생략)

제8조(위원의 제척)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신설>

----- . ----- 긴급히 조치해야 할 -----.

③ -----
----- 회의를 시작-----
-----.

제7조(조정위원회의 간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위원회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신 설>

<신 설>

제9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공동주택 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 단지 전체 입주자(입주자라 함은 세대수별 실제 입주한 세대구성원의 대표를 말하며, 1세대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5. ----- 해당 사건의 원인-----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

-----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

다만,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정 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구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

 ----- 관계서류 -----

 -----.

② -----

 ----- 5
 일 -----.

제11조(조정거부 및 중지) ①

<p>정될 때에는 <u>당해</u>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u>의한다</u>.</p> <p>제13조(수당등)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u>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u>」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4조(시행규칙) 이 <u>조례</u>에 규정된 사항외에 <u>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u>.</p>	<p>----- <u>해당</u> -----</p> <p>----- . -----</p> <p>-----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따른다</u>.</p> <p>제13조(수당 등) -----</p> <p>----- 「<u>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u>」 -----</p> <p>----- . -----</p> <p>----- . -----</p> <p>제14조(시행규칙) -- <u>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u> -----</p> <p>----- . -----</p>
---	--

< 소관 부서명 >

<p>건축과 공동주택관리센터</p>	
<p>연 락 처</p>	<p>(032) 560 - 4736</p>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 - 1176호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공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열람이 가능하오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9.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명칭 :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44번지 일원
3. 사업면적 : 53,855m²
4. 공람내용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신청(안)
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구보 게재일 기준]
6.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560-4593)